

청주지방법원 2019. 5. 2 선고 2018가단99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 - 나. 청주시 흥덕구 C 대 417m² 지상 담장 등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조형우

별지